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 500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
2.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 미만의 사업으로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위원회 및 그 사무국(이하 “세계유산위원회”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구역 내에서 국가유산의 복구 및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2. 제1호에서 정한 구역 밖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

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축·증설하여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제2호에서 정한 기준 미만의 사업으로서 세계유산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계유산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서 정한 대상사업의 범위를 만족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1)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 및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법 제11조의8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터”라 한다)의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 의견이 있는 경우

④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대상사업의 구체적 종류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유산의 평가항목

가. 대상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나. 대상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유무형의속성

다. 대상 세계유산의 완전성 및 진정성

라. 대상 세계유산의 맥락과 시각적 영향

마. 대상 세계유산의 보호·관리계획

바. 그 밖의 대상 세계유산의 가치

2. 제안사업의 평가항목

가. 제안사업의 요소

나. 행위의 빈도·기간·가역성

3. 잠재영향의 평가항목

가. 속성변화의 방향 및 정도

나. 속성변화의 가역성·지속성

제3조의4(대상사업의 사전검토)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을 시행하려는 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자는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 대상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사업의 계획을 변경(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요청서를 검토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작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도지사를 거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작성 여부 결정 및 통보가 있기 전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비대상 :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3.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실익 없음 :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경우로서,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계획등의 보완·조정을 통한 부정적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요청서 검토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전검토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는 국가유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5(평가준비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제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 개요
2. 대상사업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세계유산 개요
3.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전달 속성
4. 영향평가의 항목, 범위 및 방법론
5. 영향평가의 주체 및 예상 일정
6. 권리보유자 및 이해관계자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준비서를 검토하여 적절한 경우 평가준비서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준비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검토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지도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평가준비서 작성 및 검토의 구체

적 방법 및 절차는 국가유산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6(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제3조의5제2항에 따라 평가준비서의 수리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 및 해당 세계유산에 대한 개요 및 설명
2.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3.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 방안(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제시된 부정적 영향 제거 또는 저감방안에 따른 잔존영향의 유무 및 그 정도
5. 권리보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6. 평가수행기관의 종합의견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작성 등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7(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련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서의 작성
2.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상담 및 자문
3. 세계유산영향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자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연구경력
2.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 현황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계획서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국가유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계

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4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세계유산영향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향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6. 세계유산영향평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또는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기관은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에 대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의 누락 여부
2. 평가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현황자료 등 객관적 자료의 오류 여부
4.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방법의 적정성 및 분석결과에의 오류 여부
5. 평가서에 제시된 부정적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방안의 적절성
6. 제시된 부정적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방안에 따른 잔존 영향의 유무 및 그 정도 예측의 타당성
7. 대상사업의 추진으로 달성되는 공익·사익과 세계유산에의 잔존 영향의 비교·형량(衡量)

② 국가유산청장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2. 대상사업 또는 해당 세계유산에 관계된 행정기관의 장

3.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산 관련학과 및 건축·토목, 도시계획·도시공학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나. 가목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제3조의9(보완·조정) ①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유”란 제3조의8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보완·조정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서의 보완·조정 : 제3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목에 흠결이 있는 경우
2. 대상사업 계획 등의 보완·조정 : 제3조의8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흠결이 있는 경우로서,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각각에 대하여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제3조의10(보완·조정사항의 확인) ①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완·조정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보완·조정된 평가서(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에 변경사항 대비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이 보완·조정된 평가서를 검토하는 때에는 제3조의8을 준용한다.

제3조의11(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승인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의8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검토한 평가서(제3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서가 승인된 경우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서 승인 사실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평가서와 다른 내용으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대상사업의 인·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3조의12(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반려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제3조의9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보완·조정 요청에도 불구하고(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 보완요청이 불가한 경우에 한한다)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검토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서가 반려된 경우 그 사실을 시

·도지사를 거쳐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반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서가 반려된 경우, 사업자는 반려의 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는 평가서를 재제출할 수 없다.

제3조의13(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업무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8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 매년 1월31일까지

2. 반기별 운영실적 및 분석결과 :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 실시 시기(제3조의2 관련)

1. 사회기반시설 사업

구분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
가.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제36조에 따른 공사시행 허가 전.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을 말한다.
나. 철도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3)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
다. 항만의 건설	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전
	2)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港灣公社)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4)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에서의 준설사업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물」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린항만시설	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라. 공항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 사업 또는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 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마. 에너지 개발	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의 설치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4)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 개발사업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 설정의 허가 전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열발생설비 중 터빈·발전기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승인 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바. 수자원의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건설사업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공사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사.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설치 전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4)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다른 경륜 또는 정정 시설의 설치사업	전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
아.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 전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전
자. 임도의 설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임도설치계획의 수립 전
차. 교통시설의 개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전
카. 폐기물·(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

		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2)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허가 전,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전 또는 가축 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전 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2. 개발사업

구분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4)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전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및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전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1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

		인 또는 같은 조 제4 항에 따른 협의 전
	11)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공사	「하수도법」 제11조제2 항에 따른 고시, 같 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 전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 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 전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13) 「도시재정비 촉진 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재 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의 결정 전
	1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도 청이전신도시 개발 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 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 른 도청이전신도시 개 발계획의 승인 전
	1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 개발구역의 지정 및 역 세권개발사업계획의 수 립 전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2조에 따른 공공 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 제28조에 따 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 인 전
나. 농어촌의 개발	1) 「농어촌정비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59 조제2항 및 제3항에 따 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 전

	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업생 산기반시설 및 주변지 역 활용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 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 화 및 재생사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률」 제11조에 따른 농 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 생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전
다. 산업입지 및 산업단 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2 조제9호에 따른 산업 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 조,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 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 의 지정 전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1호에 따른 산업단 지 재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재생사 업지구의 지정 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2호에 따른 준산업 단지의 정비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에 따른 준산업단지 정 비계획의 수립 및 준산 업단지의 지정 전
	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국가산업단 지, 일반산업단지, 도 시첨단산업단지, 농공 단지의 개발사업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 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 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전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전
라.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전
	3)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자연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 전 또는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 전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또는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5)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마.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전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
	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전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전. 다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의 수립 전을 말한다.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전

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증설 사업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
가. 국가유산의 복구 또는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이 있기 전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기 전
다. 그 밖의 건축물·시설물의 설치·증설	소관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이 있기 전

비고

-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가장 먼저 인허가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 사업의 인허가등을 할 당시에 대상사업 규모 미만이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인허가등이 된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별표 2]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3조의13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한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국가유산청장은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 처분 이유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처분권자의 보완 요구에 성실히 따른 경우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8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법 제11조의8 제3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지 못한 경우				
다. 업무수행 능력이 현 저히 부족 하다고 인 정하는 경 우	법 제11조의 8 제3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